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 활성화 방안

A Study on Protecting Copyrights of North Korean Works and on
Developing Their Use under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by
Libraries in South Korea

정 분희(Bun-Hee Jeong)*

목 차

1. 서론	4.3 도서관 면책 규정 적용의 문제점
2.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북한자료 이용	5.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방안
2.1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5.1 법적·제도적 측면
2.2 국내 북한자료 이용 현황	5.2 정책적 측면
3. 북한의 저작권법	5.3 사회·문화적 측면
4. 도서관에서 북한자료 이용에 따른 저작권 제한	6. 결론
4.1 베른협약	
4.2 남북한 저작권법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 저작물교류 활성화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남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를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권의 제한 상황 하에서 북한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북한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도서관에서 자료이용에 관한 저작권 제한 관련 규정을 베른협약과 남북한의 저작권법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현재까지의 남북한 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남한에서의 북한저작물을 출판 및 배포·유통문제에 따른 저작권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북한자료를 연구·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창구 역할을 해 온 북한자료센터 등 국내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북한자료 이용 시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ways of protecting copyrights of North Korean works focusing on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in the South Korean libraries. This study deals with the articles of the copyright laws which are related with using materials in libraries both North and South Korea. It also covers related provisions of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past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has mostly focused on how we protect the copyright of publications and works which are published for profit. This study proposes some solutions from the legal · institutional aspects, policy and socio-cultural aspects in order to protect the copyright of North Korean works and improve their use under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by libraries.

키워드: 저작권보호, 저작권제한, 도서관보상금, 도서관과 저작권, 남북저작권보호, 북한저작권
Copyright Protection, Copyright Limitation, Library Compensation, Library and Copyright,
Copyright Protec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n Copyright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장, 문헌정보학 박사(jahee@unikorea.go.kr)
논문접수일자 2006년 2월 14일
게재확정일자 2006년 3월 10일

1. 서 론

최근 남북한관계의 발전에 따른 남북한간의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지금까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일부 중개업체에¹⁾ 의해 극히 제한적으로 입수되어 오던 북한자료가 소정의 절차만 거치면 기관, 단체, 혹은 개인 누구나 국내에 반입하여, 자료를 공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기관이나 단체는 소관부처를 통해 특수자료²⁾ 취급기관으로 인가를³⁾ 받으면 북한자료의 입수 및 관리가 가능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통일부 고시(“남북한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⁴⁾가 규정하고 있는 반입금지품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다양한 북한의 저작물이 남측으로 다량 반입, 시판되고 있고, 이에 따른 북한저작물 사용에 대한 저작권 위반문제가 북한으로부터 빈번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1년 4월 북한의 저작권법 제정과 2003년 국제저작권 협약인 베른협약 가입을 계기로 북한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남북한간의 주요 쟁점으로 제기될 가능성성이 높다.

남북한은 1992년 남북고위급회담의 교류협력 분과에서 저작권 보호문제를 직접 거론하였고, 1992년 9월 상호저작권 보호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체제 차이로 인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는 상호간의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합의된 원칙을 지켜 나가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남한⁵⁾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에서는 개인의 저작권이 전면적으로 보호되기는 어렵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남한 내에서와는 다른 저작권 보호방법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호저작권보호를 위한 원칙에 합의한 이후로 합의된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될 수록 저작권 보호문제가 쟁점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간에 저작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교류는 물론 남북한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4년 1월 창립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이라 한다)⁶⁾ 설립의 주요 목적은

- 1) 국가(소관부처)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업체들로 2003. 5월 현재, 남북교역(주), 아시아저널(주), 오피 플랫폼(주), 월 트레이드(주) 등을 들 수 있다.
- 2) 특수자료라 함은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발행한 이념성 자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개념의 특수자료¹⁾와는 상당히 의미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북한자료로 사용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2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 3)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르면 특수자료는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2005.12월말 현재 국내 특수자료 취급기관은 총172개임) 제2조 제2항은 특수자료를 취급·관리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특수자료 취급기관”(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지침에 의거 특수자료의 취급인가를 받은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 4) 통일부고시 제99-1호 제3조(반입금지품목) 제1항 “국현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자료는 반입 시 “특수자료 취급지침”的 적용도 동시에 받는다.:
- 5)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한국”을 “남한”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 6) 2004년 1월 발족한 이 재단은 △북쪽 산업시찰 주선 △북쪽 기업과 상품 소개 △남북간 통신 대행 △경제인 상호교류 등을 통해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민간 차원에서 가속화하고, 특히 문화예술 분야의 영화제작 교류나 저

이와 같은 북한저작물의 국내출판 및 다량 배포와 관련한 북한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영리 목적 등으로 북한자료를 남한에서의 출판과 광범위한 유통 등에 적용되는 저작권문제는 당분간 국내에서 북한저작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문협과 북한에서 관련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내각 산하의 저작권사무국⁷⁾ 간에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 까지 영리 목적의 출판이 아닌 일반인이 북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의 목적으로 북한자료를 활용하는 데에 따른 저작권문제(국내 저작권법상의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된 바가 없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주관할 부처 혹은 협의기구 등이 전혀 없었다. 남북 관계의 발전이 가속화 될수록 북한정보에 대한 수요와 북한자료의 활용은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특수자료 취급지침⁸⁾(보안 97200) (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이 존재하는 한 북한자료의 이용과 유통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도서관 면책규정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조사·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북한자료의 국내 이용 활성화에 따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문제와 원활한 정보 이용을 보장해야 하는 이중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본 연구는 남북 저작물교류 활성화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남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 특히 북한저작물의 남한에서의 이용

에 따른 보호문제를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권의 제한 상황 하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자료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자료가 남한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곳인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도서관에서 자료이용에 관한 저작권 제한 관련 규정을 베른협약과 남북한의 저작권법 중심으로 고찰한다. 북한자료 이용 시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북한에 대한 알권리 총족과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와 북한자료 이용

남북한 교류에 있어서 정치·군사 분야에 비해 문화예술분야가 비정치적인 분야이므로 정치적인 분야에 비해 비교적 교류가 용이한 편이다. 그러나 문화예술작품에 상이한 사상과 이념이 내포되어 있고, 주민들의 의식구조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류 역시 정치문제 이상으로 어려운 문제이며⁹⁾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하는 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문화교류의 범위 및 대상은 상당히 광범위하나 본 고에서는 저작물 부분에 국한시켜 논의하기로 한다.

작권 관련 사업 등을 통해 문화통일 인프라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설립되었음.

7) 기존 노동당 산하 선전선동부 출판지도국 판권처, 저작권처 등을 비롯한 각 부서별 저작권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남북저작권 교류의 경과.” 경문협. 2005.12. 『남북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움』자료. p.16)

8) 국가정보원 지침으로 1970년 제정하여 5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3년7월 현재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2). 남북문화교류와 저작권문제: 저작권 연구자료 13. p.19.

2.1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지금까지 남북한 출판교류는 실질적인 의미의 상호 교류가 아닌 일방적으로 북한저작물의 남한에서의 출판, 배포, 유통과 그를 위한 남북 한간 협력사업 등에 국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당국의 변화 및 남북한관계의 급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북한저작물의 남한에서의 이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 저작권 보호문제이다.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 “남북문화교류의 증진은 곧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그들의 권리인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¹⁰⁾ 즉 북한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지속적인 학술 및 문화발전이 가능할 것이

며 특히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서의 남한 저작물의 저작권보호문제가 논의될 시점은 아니며, 당분간은 일방적으로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남측의 노력여부가 남북한 관계 개선에 상당부분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은 남한보다 5년 앞선 1974년 세계지적 재산권기구(WIPO)에 가입을 하였으나,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특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가 남북관계가 활성화됨에 따라 북측 저작물의 남한에서의 출판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데 따른 저작권 위반 사례가 빈번히 제기되자 2001년에 저작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다음 <표 1>은 남북 저작권 교류와 관련한 주요 경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남북저작권 교류 관련 주요 일지

일자	주요 내용
1974. 8.17	북측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가입
1979. 3.1	남측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가입
1987. 10.1	남측 UCC(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가입
1988.	남측 남·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조치
1990. 8.1	남측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정
1991. 12.31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체결
1992. 5.7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체결
1992. 9.17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체결
1996. 8.21	남측 베른협약 가입
2001. 4.5	북측 저작권법 제정
2003. 4.28	북측 베른협약 가입
2004. 6	북측 저작권사무국 신설
2004. 6.24	남측 WCT(WIPO Copyright Treaty) 가입
2005. 3.18~20	북측 저작권의 남측 대행 관련 위임 및 당국간 통지서 전달
2005.4.20	남측 통일부 북측 저작권 관리에 대한 발표

출처: “남북 저작권 교류의 경과”(pp.13-16)에서 발췌, 정리.『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엄』2005.12.7 [서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10) 위의 책. p.19.

북한저작물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의 하나가 북한저작물의 이용이 국가 보안법¹¹⁾ 제7조 제5항이 정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 기타 방법으로 이름계 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복사, 운반, 배포, 판매”하는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작권법상의 권리들이 배제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¹²⁾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작권법 이론에 따르면, 저작물로서의 요건인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고 창작성이 있을 것을 충족시키는 한, 그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든가 그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가 등은 저작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다.¹³⁾ 따라서 북한자료가 그 가치와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여전히 저작권법의 저작권보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보안법의 적용여부는 “찬양, 고무 또는 동조 기타 방법으로 이름계 하는 행위”인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문제이다.

남북한간의 사회문화교류 초창기에는 북한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무분별하게 북한원전들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경문협이 발족하기 이전까지는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의 출판은 무단 복제 또는 제3국을 통한 북한 내 개별기구 또는 중개업자와의 계약이 주를 이루어 왔다. 이로 인해 북측의 저작물의 권리 관계

등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북측 기관과의 중복 계약으로 인한 분쟁 발생이 빈번했다. 남한에서 북한 원전은 거의 대부분이 저작권에 대한 고려 없이 무단 복제가 성행하고 같은 작품이 여러 출판사에서 동시에 출판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북측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사건들이 계기가 되어 남북한은 1991년 12월 13일에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¹⁴⁾를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남북한은 상호간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1992년 9월 17일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¹⁵⁾ 제9조 5항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남북한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관련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저작권법이 북한에 자동 적용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북한저작물의 남한에서의 저작권법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두만강’ 사건¹⁶⁾에서 법원은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

11) 법률 제05454호(일부개정 1997.12.13)

12) 김상호(1990), p.7.

13) 하용득(1988). 『저작권법』, p.74; 한승현(1988). 『저작권의 법제와 실무』, p.38.

14) 제16조에서는 “남과 북은 과학, 기술, 교육, 문학, 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 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라는 기본 합의를 하였다.

15) 통일부(2002). 『남북교류협력법규집』, p.263

16) 월북 작가 이기영의 장편 소설 ‘두만강’에 관한 침해금지가처분사건

고 있는데 북한지역은 한반도의 일부이므로 이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지역은 주권의 범위 내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주권의 정치도 법리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결¹⁷⁾에 근거하여 “따라서 우리 헌법에 의거하여 제정 시행된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모든 법령의 효력은 당연히 북한지역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며...우리 헌법 제3조의 규정이 개정되거나 남북한이 서로 주권을 인정하고 국가로 승인하거나 또는 1개의 국가 내에서 서로 다른 법률체계를 상호 인정하기로 하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체결된 바가 없는 이상 북한지역이 우리 주권의 범위밖에...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¹⁸⁾ 우리 저작권법이 북한 저작물에도 미침을 분명히 하였다. 지금까지 북한저작물이 국내에서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의 결정은 대부분이 우리 저작권법을 북한 저작물에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북한저작물이 우리나라에서도 국내법 수준에서 보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 적용측면에서 볼 때, 북한체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북한의 저작권문제는 남한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북한저작권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문학·예술인들은 국가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작품과 창작을 하고 그 이용도 전적으로 국가의 주도권 하에서 수행되므로 비록 북한에서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귀속된다고 하

더라도 저작자가 독자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가가 모든 보수를 지불하고 있다면, 그 권리는 개인의 권리는 아니고 사회적·국가적 소유의 대상으로써 “저작권행사는 오직 국가 내지 저작자단체만이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¹⁹⁾ 따라서 남북한간의 저작권분쟁문제가 속출하자 남한이 북한저작권 보호를 위해 민간단체인 경문협이 대북창구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6월 내각 산하에 저작권사무국을 설치, 북한 당국이 직접 남한과의 저작권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남북한 양측 모두 저작권보호문제가 남한에서 북한저작물의 영리 목적의 출판 및 다량 배포 유통문제에 따른 저작권 보호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도서관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저작권 보호문제는 양측 모두에게 관심과 고려의 대상이 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진전 될수록 국민들의 북한자료에 대한 관심 증가로 북한자료공개 확대 요구가 커질 것이며 공개가 활성화 될수록 도서관에서의 북한저작물의 보호문제가 쟁점으로 부상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북한자료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나, 학술연구 및 조사 목적 등으로 북한자료의 이용은 남북관계가 발전 될수록, 그리고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북

17) 대법원 1961.9.28. 선고, 4292 행상48 판결

18)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7.26. 선고, 89카13962 결정

1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1992). p.31

한자료가 지침에 의해 국가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기관 및 단체(개인 제외)에 의해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자료 취급기관들은 북한저작물의 저작권보호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저작권보호가 북한자료의 이용에 위축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대표적인 특수자료 취급기관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²⁰⁾ 중심으로 북한자료와 북한자료 이용 현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도서관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2 국내 북한자료 이용 현황: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중심으로

정부는 1988년 「7·7선언」을 계기로 “불온 간행물”로 분류되어 접근이 엄격히 통제되어 왔던 북한 및 공산권자료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²¹⁾ 또한 1998년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북한정보자료 공개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²²⁾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되어 온 북한자료를 일반에 공개하였다. 즉, 종전에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를 모두 특수자료로 분류, 이용에 제한을 두었던 지침을 개정하여,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일지라도

이념성이 비교적 적은 자료, 예를 들면, 순수과학, 기술, 향토, 지리, 사전 등 비이념성자료는 특수자료의 범주에서 제외하여, 일반자료로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모든 특수자료 취급기관의 북한자료 관리·운영 전반의 근거가 되고 있는 “특수자료취급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에서 북한자료를 가장 광범위하게 수집, 소장하고,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제공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북한자료소장기관인 북한자료센터를 중심으로 북한자료이용 현황을 살펴보자 한다. 북한자료센터가 형식적으로는 국내의 172개 특수자료취급기관²³⁾ 중의 하나에 불과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이를 특수자료취급기관들이 문의해 오는 특수자료의 분류·판단 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권한을 갖고(특수자료 취급지침 제3조 제2항) 있고 그 판단 결과가 타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북한자료 이용이 가장 활성화된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자료센터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2.2.1 특수자료의 정의 및 범위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1조는 이 지침의 목적을 “이 지침은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제16211호) 제4조 제6호 및 제5조²⁴⁾

20) 통일부는 북한자료공개를 확대, 일반국민들이 편리하게 북한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89년 5월 기존에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있던 “불온자료실”을 확대, 이전, 광화문 우체국 6층에 「북한자료센터」를 설치하였다.

21) 신영석(1988). 공산권자료 개방과 북한자료 공개의미. 『통일한국』 제58호. p.10

22) 1998년 9.1 개정

23) 국가정보원 담당자에게 구두 확인(기관 명단은 김정규의 논문 p.99 참조)

24) 제4조(기획업무의 범위) 제6호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본지침 수립

제5조(조정업무의 범위)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하여 행하는 조정 대상기관과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통일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국방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기타 정보 및 보안

에 의거·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항은 “특수자료”의 개념과 범위를 기술하고 있다.

①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그러나 특수자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금까지도 북한자료와 특수자료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북한자료와 특수자료의 범위가 상당부분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나 동일하지는 않다. 현행 지침에 의하면 북한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자료가 특수자료로 분류되기는 하나 북한에서 발행된 자료라 할지라도 순수과학, 기술과학, 향토, 지리 등 非이념성자료는 특수자료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북한자료가 모두 특수자료라고는 할 수 없으며, 특수자료가 모두 북한자료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문제 관련

부분은 북한에서 발행된 자료를 대상으로 하므로 특수자료라는 용어보다는 북한자료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2.2.2 북한자료 이용 현황: 통일부 북한자료 센터를 중심으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1988년 7·7선언에 따른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북한과 공산권국가의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기 위해 1989년 5월 서울 광화문우체국 6층에 430평 규모로 개관하여 현재까지 16년 동안 북한·통일관련 전문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 12월 현재 총 8만6천여 건의 북한·통일관련 자료를 소장,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자료센터는 북한영화상영, 북한실상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함으로써 북한 실상에 대한 이해를 제고,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의 구체적인 이용 자료별, 이용 유형별 통계는 <표 3>와 같다.

특히 북한영화 상영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상영, 학교 및 기관·단체들의 요청에 의한 수시상영과 지방 거주민을 위해 5개 지역(통일관²⁵⁾)에서도 상영을 하고 있다.

북한자료센터는 1998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 북한·통일자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00년 6.15정상회담 이후 북한자료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북한자료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추진하였다. 2000년에는 「조

업무에 관한 사항)

25)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11개 지역통일관(고성, 양구, 철원, 인천, 오두산, 대전, 청주, 광주, 부산, 경남, 제주)이 있으나,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기관은 5개(부산, 광주, 인천, 경남, 제주통일관)이다.

〈표 2〉 자료소장현황(2005.12.31 현재)

(단위: 건)

자료구분		일반	특수	합계	자료전산화
도서	동양서	32,561	12,281	44,842	59,685 목록등록 : 1,771 기사색인목록 : 66,013
	서양서	16,211	1,294	17,505	
	소계	48,772	13,575	62,347	
정기간행물		7,672	2,544	10,216	목록등록 : 1,771 기사색인목록 : 66,013
파일자료	동양서	2,572	431	3,003	
	서양서	0	0	0	
	소계	2,572	431	3,003	
시청각자료	MIC-FILM	1,207	485	1,692	
	VTR-TAPE	661	2,229	2,890	
	슬라이드	34	7	41	
	기타	1,024	755	1,779	
	소계	2,926	3,476	6,402	
통일부 발간물		3,734		3,734	2,900
보안자료	Ⅱ급		11종	16권	3,611
	Ⅲ급		88종	133권	
	대외비		296종	516권	
	소계		395종	665권	
합계		65,676	20,691	86,367	133,980

출처: 북한자료센터 제공(2006. 1월)

〈표 3〉 북한자료센터 이용 현황(2005.12.31 현재)

(단위: 명)

구분	자료열람현황				센터행사현황			계
	문헌자료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소계	북한영화	북한실상설명회	북한TV시청실	
'89~'04	53,579	25,964	5,904	85,447	597,645	23,705	753	707,550
'05. 합계	3,024	1,916	662	5,602	84,648	5,635	77	95,962
총누계	56,603	27,880	6,566	91,049	682,293	29,340	830	803,512

출처: 북한자료센터 제공(2006. 1월)

『선대백과사전』 등 20권 12,900페이지, 2001년 「조선중앙년감」 등 241권 10,760페이지, 2002년 「김일성선집」 등 43권 14,468페이지를 DB로 구축하였다. 그러나 북한 측과의 저작권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데다 국내 관련 기관들의 중복 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북한자료센터는 북한자료 원문DB 구축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북한자료센터는 국내 최대 북한전문도서관으로서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보자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 개최 등을 통해 북한정보자료 공개를 확대 오고 있다. 북한자료의 개별적 입수 및 소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북한자료센터가 대중의 북한에 대한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북한 자료공개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

다. 북한의 저작권법 제정과 베른협약 가입으로 북한에서도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고, 국내에서의 북한저작물 보호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북한자료센터를 포함한 국내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북한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특히 북한자료센터가 대표적인 특수자료 취급기관이므로 관계기관(특수자료 취급지침의 주관부서인 국가정보원과 저작권주관 부서인 문화관광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북한과의 저작권문제가 쟁점화하기 이전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당국 간의 협의 기구 등이 설치된다면 현재 남한 저작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서관에서의 면책 규정의 적용 등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북한이 자국 저작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01년 제정하고 2003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친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남한 저작권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 북한의 저작권법

북한은 2001년 4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4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을 채택하고 2003년 3월 1차 개정을 통해 신규정을 보충하였다. 저작권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북한은 헌법과 형법 일부에서 '저작권과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하위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었으나, 저작권법

제정을 통해 저작권보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구사회주의 국가의 저작권법보다는 서구의 저작권법, 특히 한국의 저작권법을 상당히 검토, 반영하여 체제에 맞게 변형하여 입법화하였다.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이 수반되지 않아 법의 구체성이 미흡하여 실제 법 적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법률을 제정한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저작권법이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수준에는 미달하고 있으나, 베른 협약 등 저작권 관련 국제질서 합류를 위한 사전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통일부 분석자료²⁶⁾에 따르면, "총 5장 48조로 이뤄진 저작권법은 일부 조항에서 지적 재산의 사적 소유와 상속을 인정하는 대목이 눈에 띄나, 이는 사적 소유를 인정했다고 하기보다는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지적재산의 기준을 법제화 함으로써 북한에서 만들어진 지적재산의 판매와 이를 통해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저작권법 제정이 북한 내부에서 저작물 보호를 위한 목적 보다는 향후 대외 개방 시 북한저작물 이용에 따른 경제적 수익 등을 감안, 실체적 상호주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남한에서 불법적으로 출판되고 있는 북한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정 목적은 '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으며, 저작권보호의 주요 대상은 논문, 소설과 음악, 무대예술, 영상, 미술, 사진, 도형 및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과 번역, 편곡,

각색 등의 개작 및 민족고전작품을 현대말로 고쳐 만든 저작물도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 인정의 범위는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저작물의 개인소유와 양도·상속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물 발표 후부터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 까지 보호를 하고 있다. 저작물의 이용 절차는 기관·기업소·단체 등의 이용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가격제정기관(국가)이 요금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인접권에 대해서 저작물의 이용, 공연·녹음·방송을 한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기간 및 양도·상속을 저작권자와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북한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은 <표 4>과 같다.

북한저작권법의 주요 특징은 개인의 창작물에 대해 개인소유권을 인정(제16조)했다는 점(과²⁷⁾) 저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의 양도·상속권도 인정(제21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저작물의 상당수가 기관 명의로 발간된다 는 현실을 감안할 때 크게 유의미한 내용은 아 니나, 법 규정으로 사유권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인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주요한 특징으로는 저작권법과 관련한 국제조약의 준수에 대한 의지를 표명(제5조~제7조)함으로써 향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저작권조약 가입을 위한 사전 준비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북한의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가입은 1972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한 이후 31년만인 2003년 베른협약에 가입을 통해 저작권문제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세계저작권협약(UCC)에는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저작권법의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 제정을 통해 국제저작권협약 가입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이

<표 4> 북한저작권법주요내용²⁷⁾

구 분	주요 내용
제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작자의 저작활동 보장 및 권리보호 다른 나라 법인·개인의 저작권 보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논문·소설과 음악·무대예술·영상·미술·사진·도형 및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 번역·편곡·각색 등의 개작 및 민족고전작품을 현대말로 고쳐 만든 저작물도 포함
저작권 인정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격적 권리와 재산적 권리를 인정 저작물의 개인소유와 재산권의 양도·상속권 인정
보호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물 발표 후부터 창작자가 사망한 후 50년 까지 인정
저작물 이용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기업소·단체 등의 이용절차를 상세히 규정 가격제정기관(국가)이 요금을 결정
저작 인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물을 이용, 공연·녹음·방송을 한자의 권리를 인정 보호기간 및 양도·상속을 저작권자와 동일하게 인정

27) 북한 형법('87년 제정)에서도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하는 범죄'의 하나로 일부 저작인격권 침해 죄를 규정(제98조)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보호를 법 제정을 통해 공식 인정한 것은 저작권법이 최초임.

28) 저작권조정위원회 자료(2001).

법을 제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 제정을 통해 국제협약 가입 및 대외문호 개방 의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²⁹⁾ 동시에 북한은 남한 내 북한 저작물 보호를 통한 저작물 사용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동안 무원칙하게 남측에게 요구해 오던 저작권료를 저작권법에 의해 근거와 명분을 공식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표 5>는 남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차이를 도표화 한 것으로 남북한 저작권법의 차이를 비교해 봄으로써 북한저작권법의 특징을 더욱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한저작권법은 ‘출판·발행·공연·방송·상영·전시가 금지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부인’(6조) 함으로써 사실상 체제에 반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보호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국 및

서구의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에도 저작권을 인정하는 관례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는 남한의 저작물이 북한에서 출판되더라도 북한에서 저작권보호를 받기가 현 저작권법 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이나 서구의 저작권법은 “저작권법 논리상 독창성만 갖추면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되며 별도의 절차나 형식이 필요치 않으나, 북한의 저작권법은 저작권 대상의 선정기준을 명시, 해당기관이 ‘과학성·객관성·현실성’의 원칙 하에 정하고(8조), 체제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보호기준을 마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구제에 대한 배상청구, 배상액 산정방법 등 구체적 내용의 규정이 미비하여³⁰⁾ 실제 법 적용이 용이

<표 5> 남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차이

해당 조항	북한 저작권법	남한 저작권법
6조 저작권 보호	출판발행·공연·방송·상영·전시가 금지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않음	저작권법 논리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저작물의 내용도 저작권은 인정
8조 저작권 보호요건	과학성·객관성·현실성 원칙에서 저작권 대상 인정	저작권법 논리상 독창성만 갖추면 저작물로서 보호
9조 저작물 종류	영상저작물·미술저작물 등 8개 항목 *교예를 포함시킴	어문저작물·연극저작물 등 9개 항목(4조)와 2차적 저작물(5조), 편집저작물(6조) 포함
10조 2차적 저작물	민족 고전작품을 현대말로 고쳐 만든 저작물도 인정	2차적 저작물 인정(18조2)
15조 개별저작권 종류	전송권 불포함	전송권 인정(18조2)
18조 영상저작물저작권	영상제작자가 저작권 자체를 보유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양도받은 것으로 규정(75조)
22조 기관단체저작권	계승기관 단체에 저작권 계승	기관 등이 소멸시 저작권소멸(46조)
31조 저작물 사용료	국가가 결정	당사자간 결정
34조 실연자 권리	실연자에 성명표시권 인정	불인정(63~65조)
47조 침해시 책임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 인정	형사책임반 인정(97조5)

출처: 통일부(2001) 정보분석국 보고자료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특징”에서 발췌, 정리

29) 저작권조정위원회(2001).

30) 북한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침해를 침해할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7조는 “이 법을 어겨 저작권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라고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 않다. 그러나 저작물의 생산과 이용이 사실상 국가에 독점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간의 분쟁으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 발생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현 단계에서 북한에서의 저작권법 위반문제에 관한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저작권법은 북한내부에서 저작자의 저작권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 보다는 저작권법 제정을 통해 남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통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합법적 토대를 갖추었더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남한 내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북한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함으로써 저작물 사용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남북한 양측은 북한 측의 무원칙한 대가 징수 관행을 저작권법에 의해 사용료 요구의 근거와 명분을 공식화 함으로써³¹⁾ 상호 분쟁의 소지를 없앰으로써 쌍방이 인정하는 수준에서 상대방의 자료(남측에서 북측 자료의 이용)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호 신뢰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국제저작권 협약 가입을 위한 사전 준비와 대외 홍보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4. 도서관에서 북한자료 이용에 따른 저작권 제한

도서관은 정보자료를 수집, 무료로 제공함으

로써 궁극적으로 인류의 문화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저작권법은 저작물 창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창작활동을 진작하여 인류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저작권 보호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이 저작물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반면, 도서관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면책규정의 적용이 저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제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저작권과 도서관과의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여 세계 각국의 저작권법은 공공문화시설로서 도서관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도서관의 면책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나, 그 요건을 까다롭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도서관에서 저작물 이용이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³²⁾

미국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Use, 저작권법 제107조) 차원에서 저작권을 일부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공정한 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공정이용행위로 저작물의 이용이 학문·예술의 진보를 증진시켜 사회에 이익을 가져왔느냐 여부와 이로 인해 공정하게 이용된 저작물 상 권리자가 갖는 저작물의 시장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의 여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³³⁾ 이것은 우리법상 사적 복제의 범주와 연관시켜 다루어질 문제이며, 도서관에서의 복제

31) 저작권법 제정 전까지 북한저작물은 주로 영화·음반·서적 등의 분야에서 저작권 사용료와는 무관하게 일정대 가를 지불하고 국내에 소개되어 왔다.

32) 이호신(2004), p.44

33) 박의환(2001). 도서관이용과 저작권문제. 『국회도서관보』 제38권 2호(2001.3/4). p.10.

문제는 미국 저작권법 제108조에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 108조는 “도서관과 아카이브에서의 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제한 요건은 첫째, 직간접적으로 영리적 목적 없이 복제나 배포가 행해질 경우, 둘째, 도서관과 아카이브의 장서가 공중에 개방되거나, 도서관과 아카이브 소속 연구자들이나 특수한 연구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에게 이용될 경우 저작권 제한을 두고 있다.³⁴⁾

우리나라의 현행 저작권법도 도서관의 공공적 기능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도서관에서의 자료 이용 시 저작권을 제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i)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ii)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iii)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의 제한이 허용된다. 특히 전자도서관구축의 보편화로 온라인 전송 시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자들의 원활한 자료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보상금지급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저작권을 집중적

으로 관리하기 위한 저작재산권 집중관리기구인 한국복사전송권센터를 2000년 7월 1일 설립하여, 개별적인 저작권문제를 일괄적으로 처리,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적법·신속·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복사와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 보상금제도는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도서관의 근본적 존립 근거를 해치지 않으면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상금 지급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며,³⁵⁾ 향후 저작권법 개정 시 또 다른 논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잠정적 조치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따라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북한자료의 상당부분이 일반적인 소지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특정 기관(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만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저작권보호를 위한 보상금제도 등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자료의 수요 증대로 북한자료의 원문DB구축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³⁶⁾ 저작자에 대한 배타적 전송권³⁷⁾ 문제도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북한의 저작권법은 개별저작권에 대한 전송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제

34) 미국저작권법은 도서관들이 자료보존을 위하여 복제를 하는 경우 3부까지 복제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5) 서구의 몇몇 국가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보상금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은 공공대출권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공대출권은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대출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이호신, p.56).

36) (주) 코리아콘텐츠랩은 북한의 학술논문 6만여 편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 볼 수 있는 북한전자도서관을 2003년 9월 1일부터 개설하여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여 2004년 4월 북한학 전자도서관으로 오픈되었고, 2004년 5월 남한의 민족 21, 북한의 조선출판물수출입사와 함께 ‘북한학술지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http://kpjournal.com>) 그 외에도 관련 기관에서 북한자료 DB 구축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7) 전송이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15조), 남한의 저작권법은 개별저작권에 대한 전송권은 인정하고(제18조 2항) 있다. 즉, 디지털도서관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에서의 복제와 전송에 대해 면책을 인정하는 동시에 도서관의 디지털 복제와 전송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1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 재산권은 창작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여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의 일종으로 우리나라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베른협약(Berne Convention)과 WIPO저작권조약(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가입하고 있다. 각각의 국제협약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자의 권리의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저작권의 면책도 저작권 제한의 일종으로 국제협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³⁸⁾ 그러나 각 국가는 자국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고유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의 일률적 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저작권 분야의 국제적 보호는 각 국가간의 상이

한 지적 재산권 제도와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의 조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³⁹⁾ 본 연구는 국제적인 저작권보호의 표준으로 간주되고 있고 저작권과 관련하여 북한과 한국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유일한 국제협약인 베른협약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다.

베른협약은 1886년 10월 9일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국제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 12월에 WTO협정을 수락하였고 1995년 WTO의 출범과 동시에 TRIPs(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협정이⁴⁰⁾ 발효하게 되어 1996년 8월 21일 우리나라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동맹국의 국민은 내국인과 평등하다는 내외국인평등의 원칙(Principle of Assimilation)과 협약상의 권리에 대하여 동맹국이 저작자에게 최소한의 보호(Minimum of Protection)를 부여한다는 최저보호원칙을 그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다⁴¹⁾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제한과 관련하여 베른협약은 문화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해 맺어진 것으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도서관 면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하는 것은 동맹국의 입법에 맡긴다. 다만, 그러한 복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normal exploitation)과 충돌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legitimate interests)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⁴²⁾ 도서관의

38) 이호신(2004).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한 연구. 도서관 59(1), p.46.

39) 정진섭·황희철(1995). 『국제지적소유권법』. 육법사, pp.60-61.

40)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41) 김진영(2004). 『남북교류상 저작권 분쟁 및 협력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2-93.

42) 베른협약 파리규정 제9조 제2항.

면책에 관한 것도 위 조항의 해석으로 규명할 수밖에 없으며, 일부분의 범위도 이에 의해 해석하여야 한다. 즉, 도서관에서의 이용형태가 복제인 경우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저촉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용된다고 해석되는 것이다.⁴³⁾ 따라서 베른협약이 도서관에서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서관에서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소량으로 복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가 일정부분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유추해석 할 수 있다.

4.2 남북한 저작권법

남북한 모두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제한에 관한 명문화한 조항을 두고 있다. 남한 저작권법이 구체적으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대해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와 디지털 형태의 복제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저작권법은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 저작권의 제한을 받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자료의 전송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 실제 법 적용이 곤란한 측면이 없지 않다.

북한저작권법은 제32조에서 저작권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⁴⁴⁾

1. 개인 또는 가정의 범위에서 쓰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번역할 경우
2.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
3. 학교교육을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 방송, 개작할 경우
4. 국가관리에 필요한 저작물을 복제, 방송하거나 편집물 작성에 리용할 경우
5. 저작물을 소개하기 위하여 방송하거나 신문, 정기간행물에 내는 경우
6.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
7. 저작물을 무료로 공연할 경우
8. 공공장소에 설치된 저작물을 복제할 경우
9. 맹인을 위하여 저작물을 록음하거나 점자로 복제할 경우

특히 제2항은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 있는데, “도서관, 문헌고, 박물관, 기념관 같은 곳에서 저작물을 보존, 진열, 열람, 대출용으로 복제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물을 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복제 주체, 복제의 대상, 이용 목적, 복제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법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하위 규정도 없다. 또한 디지털 형태의 복제, 전송 등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도 전혀 없으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김책공대 전자도서관⁴⁵⁾ 구축사업 등이 궤도에 오르고 전자정보 이용이 보편화되면 북한내부

43) 이호응(2004). 저작물“일부분”이용에 관한 적정선.『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세미나(2004 저작권세미나)』.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p.11.

44) 장명봉(20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제32조. p.641.

에서도 저작권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북한 내부의 저작권보호문제는 장기적 연구과제로 미루어 두고, 현재 국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북한자료의 저작권 보호문제와 향후 북한제작 디지털자료와 남북합작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북한 디지털자료의 남한에서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저작권법과는 달리 남한저작권법은 도서관에서 면책 규정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에서 복사기를 통한 복제(아날로그자료의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남한 저작권법 제28조는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이라는 표제 하에 비교적 구체적인 부분까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제1항은 복제의 주체에 대한 조항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과⁴⁶⁾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장을 포함하며, 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도서관 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즉, 도서관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

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다.⁴⁷⁾ 그러나 복제가 상업적인 영리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면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복제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 슬라이드, 음반, 비디오물, 마이크로 형태물, 테이프 등 각종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의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 및 문교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3호)

이용 목적 측면에서 보면 이용자가 조사·연구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제 요구를 받은 도서관이 이용자의 이용 목적을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조사·연구 목적이 아닐 경우 이용자가 고의적으로 이용 목적을 위장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조항은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⁴⁸⁾ 복제 범위 측면에서 보면, “도서 등 일부분의 복제로서 1인 1부만이

45) 북한 과학인재 양성의 산실인 평양 김책공업대학에 2005.10월 건립된 전자도서관(디지털 라이브러리)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야심 찬 계획에 따라 건립된 첨단설비를 갖춘 최고의 도서관. 지하층과 지상 5층 규모인 전자도서관의 총 건평은 1만6천500여㎡이며 12개의 전자열람실과 12개의 도서열람실, 4개의 열람 홀이 있다.(연합뉴스 2006.1.26)

4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상 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함(동법 제2조제1호)

47) 신재호(2005). p.33.

허용된다. “일부분의 복제물”에 대한 범위 설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이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각 도서관별로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많은 상황이다. 일부분을 절반 이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와⁴⁹⁾ 일본의 경우처럼 1/3이하로 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환경 하에서 일부분이라는 분량 제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과 도서관측이 그것을 이용자에게 어떻게 준수시킬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⁵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저작권법이 도서관에서의 복제에 대해 뚜렷하게 저작권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조사·연구를 위한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디지털도서관의 보편화로 전통적인 도서관에서 적용되던 저작권법상의 면책규정과 더불어 전자도서관을 위한 별도의 면책규정이 명문화되었다. 현행 남한 저작권법은 디지털 형태로 기록된 저작물의 아날로그 복제물을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고시에⁵¹⁾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즉,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는 조건으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프린터 등을 통해 출력하여 복제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⁵²⁾ 즉, 남한의 저작권법은 도서관 보상금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을 고

려함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최소한도의 보상을 통해 상호존중을 통한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 (다른 도서관 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 등을 포함한다)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저작권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보상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즉, 일반적으로 조사·연구 목적의 자료 출력은 1면당 3원을 지불하여야 하고, 파일 전송은 무료이다.

개별 도서관이 자체 DB구축한 자료와 외부 도서관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를 프린터에 의한 출력(디지털자료의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과 관련하여,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호에서는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이하 “컴퓨터 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제3항은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료를 전송받은 경우 복제의 주체는 전송받은 도서관이며, 이 도

48) 이형하(1992). “저작권법상의 자유 이용.”『지적소유권에 관한 제 문제(하)』, 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처, p.388.

49) 허희성(2000). 『신축조저작권법개설』(서울: 저작권아카데미), p.308.

50) 흥재현((1999). 인터넷시대의 디지털도서관구축·운영과 관련한 저작권문제. 『정보관리학회지』 16(1), p.46.

51) 고시 2003-9

52) 신재호(2005). p.36.

〈표 6〉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문화관광부 2003-9호)

구 분	이용 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	전 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행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 * 출력 :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 *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한다.
- * 1파일 :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말한다.

서관이 보상금 지급주체가 된다. 따라서 소량으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자료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전송받은 도서관에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 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송받은 자료의 경우 전송 횟수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별도로 동시 열람 이용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함으로써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것이 아니라면 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제4항은 위 조항들에 대해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도서관 등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의 복제를 함에 있어서 그 도서 등이 디지

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즉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자료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에서의 저작권보호의 제한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조항이 제5항이다. 제5항은 “도서관 등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 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상금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보상금의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를 위임하고 있다. 〈표 7〉은 현행 남한 저작권법에서

〈표 7〉 도서관 면책규정의 내용⁵³⁾

복제 및 전송의 목적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	면책의 요건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 (디지털 복제 불가) 열람할 수 있도록 도서 등을 복제, 전송	디지털 저작물로부터 출력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보관 또는 관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부수이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서 등의 복제	디지털복제 가능 단,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	디지털 복제 불가 열람을 위한 도서 등을 복제 전송	디지털 복제 불가 판매용 도서 등은 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 *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 불가 * 보상금 지급 공탁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면책규정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상금제도와 관련하여 남한의 저작권법은 개별저작권자의 권리행사와 저작물이용자의 저작권료 지급 등의 편의를 위해 일괄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재산권자단체는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출판권자 및 디지털베이스제작자를 포함)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정하는데, 2003. 10월 저작권법상 신탁관리단체

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도서관보상금 분배 지정단체로 지정되었으며⁵⁴⁾, 현재 상당수의 도서관들이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통해 보상금 지급문제를 처리하고 있다.⁵⁵⁾ 마지막으로 제6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도서관 등은 저작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⁵⁶⁾고 명시함으로써

53) 이상정·송영석(2003), p.207.

54) 신재호(2005), p.40.

55) 도서관이 저작재산권단체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한 해의 다음해 4월 30일까지 그 이용 내역과 보상금을 저작재산권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지급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56)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의2(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

법 제28조제6항(법 제60조제2항·법 제71조 및 법 제73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불법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기술적 조치

가. 그 도서관등과 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도서관 등의 이용자(이하 “도서관등의 이용자”라 한다)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외의 방법으로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 등(이하 “도서 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나. 도서관 등의 이용자 외의 자가 도서 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암호화 조치

다. 도서관 등의 이용자가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열람 또는 복제외의 방법으로 도서 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라.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2.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

3. 컴퓨터 등에 경고표지의 부착

4.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도서관 등으로 하여금 디지털형태의 복제방지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북한자료의 이용이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포함한 특수자료 취급기관의 대다수가 서울·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지방 이용자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므로⁵⁷⁾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북한자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복제·전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남한의 저작권법은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의 문제에 관한 한 국제협약에서 조차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법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복제의 주체를 도서관으로, 특히 사서를 포함한 도서관 직원 또는 도서관 직원의 감독 하에 이용자가 복제를 하는 경우에만 한정한 점은 현실과 괴리된 규정이라 볼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 소규모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도서관이 전문복사업자가 도서관 구내에 복사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 적용 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디지털 자료의 출력을 위해서는 디지털자료가 당해 컴퓨터에 전송되어야 하고, 디지털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범위가 당해 도서관안에서 또는 다른 도서관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저작권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되므로 디지털도서관 구현과 보편화를 위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의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제한문제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관외 이용자들에게 저작물의 원문정보 제공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저작권자로부터 복제권, 전송권 등의 이용허락을 간소화하는 방법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저작권법은 이용 목적을 조사·연구로 제한하고 있는데, 도서관 직원이 이용자의 이용 목적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도서관 이용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자료의 이용 시 아직까지 상당수의 이용자가 레드 커플렉스에서⁵⁸⁾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조사·연구 목적으로 북한자료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용 목적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디지털도서관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도서관의 공공성 혹은 사회적 기능을 감안, 미국과 같은 공정한 이용(Fair Use)의 범주와 같이 제한 범위를 구체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 하에서 전자도서관이 제대로 기능하고 그 존립 근거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제도와 공존하면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원활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즉, 도서관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과 사회적·공

57) 지방에 일부 인가기관이 있으나 자료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58) 북한과 관련되는 내용을 접할 시 받을지 모르는 공안 당국으로부터의 조사, 혹은 위협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한편, 저작권분야 또한 도서관의 공공성을 존중하고, 특히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이용자의 요구 수준 변화 추세를 고려하여 도서관에서의 면책 규정 적용에 탄력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저작물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 및 관련 단체들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3 도서관 면책 규정 적용의 문제점

남북한 저작권법 공히 저작물의 도서관 이용에 따른 면책규정을 두고 있으나, 양측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의 저작권법을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북한저작권법이 상당 부분 남한 저작권법의 내용을 수용하였으나, 구체적인 조항이 없이 선언적 의미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북한저작물 이용 시 남한의 저작권법을 적용하여 도서관에서의 면책규정 적용시 문제점을 아날로그 자료 복제 시와 면책규정에 대한 디지털자료 복제, 전송시 제기되는 문제점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남한 저작권법은 “도서관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에게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저

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복제 주체문제는 국내에서 자료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현저히 제한되어 있는 북한자료⁵⁹⁾의 경우 관련법⁶⁰⁾의 개정 또는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특수자료 취급기관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설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특수자료 취급기관은 대부분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제한을 적용할 수 있는 도서관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도서 등을 복제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북한자료는 복제와 대출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자료보다는 복제 주체(전문복사업자 문제 등)의 문제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용자의 요구에 의한 복제는 도서 등 ‘일부분의 복제’로서 1인 1부 만이 허용된다. 북한자료 복제는 특수자료 취급기관이 지침 제6조 4항에⁶¹⁾ 따라 복사한 자료를 복사·양도대장에 기록하고 이용자에게 제공, 활용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자료 센터 등 비교적 북한자료공개 활용이 활성화된 몇 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특수자료 취급기관들은 복제, 양도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⁶²⁾ 또한 북한자료이용이 활성화된 기관들도 북한자료 복사는 일정한 조건을⁶³⁾ 갖춘 자에게만 복사를 허용하므로 현 지침이 개정 혹은 폐지되지 않는 한 저작권법 적용에 큰 어려움은 없다. 현 지침은 북한자료 복

59) 본 연구에서 북한자료는 북한에서 발행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뜻한다.

60)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특수자료 취급지침이 해당됨.

61) “취급기관의 장이 특수자료를 복사 또는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할 때에는 복사·양도대장(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여야한다.”(제6조 제4항)

62) 통일부에 보고된 통일부 산하 11개 특수자료 취급기관 자료 이용실적 자료에 의하면 북한자료센터를 제외하고는 10개 기관 모두 복제 활용 실적은 전무하다.

63) 소속기관장 추천서와 서약서(서약자의 책임 하에 복사·대출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음)를 요구하고 있다.

사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각 취급 기관이 자관의 실정에 따라 수립한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내규⁶⁴⁾에 따라 복제의 범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나,⁶⁵⁾ 통상적으로는 복제가 허용된 자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서 복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특수자료 취급기관들이 아직까지 이러한 규정보다 축소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복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자료 활용에 따른 불편함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향후 지침의 전면적 검토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자료의 복제에 따른 저작권 제한문제는 향후 지침 개정의 추이에 따라 심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작권과 관련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쟁점으로 부각될 소지가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북한자료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련 사업 등에 따른 북한자료의 전송권 및 전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문제이다. 북한 디지털자료의 아날로그 형태의 복제에 따른 보상금지급문제는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자료의 복제문제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활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등에 대해 북한 측으로부터 문제제기 된 바가 없고, 남측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었다. 현재까지 북한자료가 디지털화된 사례가 많지 않고 김일성저작집 및 조선중앙연감 등 일부자료가 디지털화 되었으나, 이용이 아날로그자료에 준해서 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파일 전송 등은 제한되고 있다. 디지털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 북한에서 디지털 형태로 발간된 각종 자료(CD, DVCD 등)와 남한에서 남북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과 공동 제작한 디지털자료로 나눌 수 있다.

북한에서 디지털형태로 발간된 비이념성자료는 지침에 따라 국내 일반자료와 동일하게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으나, 이념성 북한자료는 제한된 장소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아날로그자료와 달리 복사량을 도서관 직원이 일일이 감독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아날로그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고, 디지털자료는 보존 또는 소극적인 제공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에서 남북한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한과 공동 제작한 디지털자료는 비이념성자료로 반입승인을 받은 것으로 국내자료의 보상금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자료 이용에 따른 보상금문제는 북한과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지급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 문제는 당국간 협의가 필요하나, 현 단계에서는 복제, 전송을 하는 대상 디지털화된 북한자료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향후 아날로그자료 보다는 디지털자료가 보편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자료의 도서관 이용에 따른 보상금 문제를 검토할 시점이다. 따라서 한시적으로는 남한에서 북한 저작권문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문협과 북한 저작권사무국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집중관리기구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

64) 특수자료 취급지침(제5조 1항)은 “취급기관의 장은 특수자료 관리 및 취급을 위해 자체 내규를 수립·시행하는 등 전반적인 보안책임을 진다.”라고 규정, 각 취급기관이 자관의 실정에 맞게 내규를 마련, 운영하되 보안책임은 해당 기관이 지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65) 통일부는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내규(제4조 제6항)에서 “ . . . 복사의 범위는 저작권법 등을 고려하여 담당 사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자료는 향후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공공성이 높은 자원이라는 점을 감안, 통일대비 차원에서 북한연구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자료의 광범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복제 주체, 복제 범위 등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에서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면책규정의 적용은 북한이 정치한 법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인 베른협약과 남한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저작물의 저작권 제한 등을 포함한 저작권 보호문제를 전반적으로 협의해 나가기 위한 남북한 상호 협의기구 등을 설치가 필요하다.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시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국제협약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보호 방안

이 장에서는 도서관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원활한 정보이용 방안을 법적·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5.1 법적·제도적 측면

1)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

북한저작권법의 도서관 면책규정이 실제 법

적용 시 구체성이 부족하고, 하위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북한저작권법이 남한 저작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북한저작물의 남한 내 보호를 위해 남한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남한 저작권법은 국내외에서 발행된 일반적인 저작물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령으로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국내에서 북한자료 이용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황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복제 범위와 관련하여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전체 복사는 허용되지 않고, 대체로 절반이하 혹은 1/3이하로 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북한자료는 개인이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연구의 특성상 대부분이 조사·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고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에게 복제 범위를 제한하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여 전반적으로 북한연구를 위축시킬 것이다. 특히, 현재의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이를 기관을 통하여 않고 자료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차원에서도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복제 등에 대한 저작권의 예외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저작권법에 한시적으로 북한자료 활용을 위한 특례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소관 부처인 문화관광부, 남북한 교류 소관 부처인 통일부, 특수자료 취급지침 소관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협의 하에 현 저작권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북한자료의 국내 이용 시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

한 도서관 면책 규정의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남북한간의 부속합의서 혹은 협정 체결
 1992년 9월 17일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⁶⁶⁾ 제9조 5항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남북한간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남북한이 상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겠으나, 실현 가능성은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상에서 거론된 상호보호 조항을 발전시켜 실체적, 절차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면책규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항을 포함하여 “저작권의 정의, 내용, 보호기간, 제한, 저작물의 종류 등에 대하여 남북합의하에 세칙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⁶⁷⁾ 이 방안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채택된 바 있다. 이 방법은 저작권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을 일일이 거쳐야 하고 그 결과가 우리의 저작권법과 불일치되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⁶⁸⁾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므로 저작권협정은 단순한 행정상의 합의일 수도

있고 이를 이행할 의무는 국가간의 부담감이 적을 수 있다. 또한 이 방법은 기존 저작권법과 배치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만일 협정 저작권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낮게 남북합의가 이뤄질 경우, 기존 저작권법과의 상충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⁶⁹⁾ 이 방법은 도서관 면책 규정 이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하므로 북측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어려움이 있다. 도서관 면책 규정 적용에 따른 저작권 보호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과 양측의 자료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명문화한 부속합의서 혹은 협정체결은 별도의 세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편리한 측면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다만, 세부 규정마련을 위한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실현 가능성 여부가 결정된다는 단점이 있고, 남북한 관계의 특성상 다른 당면 현안에 밀려 우선순위에서 지체되어 논의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5.2 정책적 측면

1) 남한 정부 내 협의체 구성

북한저작물의 저작권보호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관 정부부처간의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남한 내부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남북한간의 협의에 우선되어야 한다. 남북한 출판물교류의 소관부서인 통일부 사회문

66) 통일부(2002). 『남북교류협력법규집』. p.263.

67) 한승현(1995). “남북한간 저작권 상호보호방안”. 『95년도 전문가 위촉과제종합(사회·문화분야)』,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pp.3-18.

68) 제 3조(남한과 북한의 관계) 1항

69) 김진영. pp.125-126.

학교류과와 북한자료관리, 유통 주관 부서인 북한자료센터, 저작권 주관부처인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도서관정책 담당 부서인 문화정책과, 북한자료 관련 지침 소관과 전국 172개 특수자료 취급인가기관을 감독, 총괄하고 있는 부처인 국가정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민간 기구인 경문협을 창구로 북한 당국인 저작권사무국과 저작권문제를 협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물론 경문협의 역할이 양측 간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당국자간의 대화 채널이 아닌 민간단체가 북한 당국과의 대화 창구로 이용된다면, 모든 의사 결정이 극히 제한적이고 정부 당국의 방침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북한 당국과 직접 대화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정부부처간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부처의 사무관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여, 협의체 설립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시급하다.

2) 남북한간 협의기구 구성

정부 내 협의체가 구성되면, 남북한이 상호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남북한간 협의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비록 북한의 저작권법 제정으로 북한의 저작물이 보호될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곤란하다. 향후 저작물 보호를 위해서는 당국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로는 당국간의 대화 채널이 열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

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남북한간에 저작권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실질적 협의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남측은 북측과의 저작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북측이 요구한 통지사항대로 남측 민간교류단체인 경문협을 통한 협의 채널 상태가 과도기적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저작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당국간 협의 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며 당국간 협의 채널 구축문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물론 경문협이 저작권과 관련한 실무적인 협의를 위한 대북 단일 창구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일정 부분 저작권보호를 위해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남북간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 및 운영체제가 다르고 근본적으로는 사회체제가 다르므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괴리가 상당히 큰 것을 감안하면, 남북간에 저작권보호가 일정한 수준으로 오르기까지는 창구를 정부 측으로 일원화하여 협의해 나가는 것이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저작권 협의의 초기단계부터 책임 있는 당국이 나서서 협의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민간단체에 모든 걸 맡겨 놓는 건 장기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따라서 남북한 저작권 통합기구를 설치, 당국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남북 기본합의서 부속합의서>에 의거, 상호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 협의기구는 남북한간에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는 상호 이해와 신뢰구축을 위한 장기적 통합차원에서 양국의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유통시키게 될 도

서관의 역할을 고려, 도서관에서 북한자료의 이용을 위한 저작권 면책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도서관에서의 북한저작물의 전송·복제 등의 문제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방법, 저작물 집중 관리기구 설치 등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기구 설치가 시급하다.

3) 북한자료 대폭적 공개

위의 방안들과 더불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북한자료공개를 확대하는 문제이다. 남북관계 발전에 따른 북한정보 수요를 감안할 때, 북한자료 공개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질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저작권보호의 제한을 하는 도서관에서의 복제문제를 수반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상당수준으로 진전을 이루어 상호 간 협의 하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과도기적으로 남한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권 보호의 제한문제가 국내자료와 기타 해외자료에 대한 적용보다 훨씬 예외적으로 광범위한 적용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북한자료가 특수자료 취급기관이라는 제한적인 장소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문제가 쟁점화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자료의 유통이 극도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현행 법 체계로는 모든 북한자료 이용자 를 잠정적인 범법자로 만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즉, 북한자료 이용자가 적정

한 수준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이용할 의지가 있어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개인이 북한자료를 소지하는 게 허용되지 않으므로⁷⁰⁾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내부 지침으로 북한자료 이용 전반을 통제하고 있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남북한 관계 주관 부서인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특수자료 관련 업무를 통일부로 이관하여 전향적으로 지침의 존폐 문제를 검토할 시점이다. 이는 남북한관계에 적용되어 온 기준의 통일부의 관련 법령 등과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⁷¹⁾ 상당한 수준의 북한자료 공개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5.3 사회·문화적 측면

위에서 살펴 본 법적·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과 더불어 병행되어야 할 것이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보호방안으로 1차적으로는 남북이 공동으로 가입하고 있는 베른협약 준수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별도의 준비과정이나 절차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베른협약을 기초로 상대방 저작물의 보호를 주장하는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라 “잠정적 특수 관계” 이므로 이 협정에 의한 상호 보호의 의무를 부인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간의

70)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만이 북한자료를 구입, 소장, 활용이 가능함.

71) 통일부 “남북한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 방법”(통일부고시 제99-1호)는 반입금지품목(제3조) 제1항에서 국 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간행물 . . .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정 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범위 및 관리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직접 협정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구속성이 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⁷²⁾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보호문제와 관련된 쟁점들이 모두 남측의 저작권 위반사례에 대한 북측의 이의제기가 주요 이슈이므로, 남북이 모두 베른협약에 가입한 상태이고 남한 저작권법이 베른협약 수준의 법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장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은 교육을 통한 의식의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법적·제도적 혹은 정책적으로 방법만으로 현실 적용 시 저작권보호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다.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과 북한자료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위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에서 저작권보호를 위한 면책 규정 적용 시 저작물의 이용 목적, 이용 범위, 디지털자료 이용 시 전송, 복제 문제 등에 대하여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의 소지가 많으므로 사서를 비롯한 도서관직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해 면책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서를 비롯한 도서관 직원으로 하여금 저작권보호의 당위성과 도서관의 사회적·공공적 기능으로 인한 면책 규정 도입 등에 대해 충분한 인지를 하고 이용자들의 과도한 요구나 문제제기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들의 합의하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각 기관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화된 북한자료의 경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가정보원 및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한국복사전송권센터 등과 업무 협력 차원에서 북한자료복제 등 이용(아날로그·디지털자료 포함) 관련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전체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전달, 담당자들이 혼선 없이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도서관은 이러한 지침을 토대로 자관의 특성에 맞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직원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6. 결 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대화가 증가하고 각 분야의 교류·협력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5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⁷³⁾이 제정되었다. 동법의 발효로 남북한관계는 본격적인 협력과 공존을 위한 구체적 실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남북교류 활성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고, 그 가운데 특히 사회문화 교류는 비정치적 분야이므로 최근 수년간 타 분야에 비해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문화 분야 중 저작물교류 활성화를 위해 상호 저작물에 대한 저

72) 김진영, 앞의 책, p.124.

73) 2005.12.29일 공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대화 증가 및 각 분야의 교류·협력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 필요에 따라 제정. “남북관계의 기본이 되고,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률’”(통일부(2006). 국민과 함께 여는 평화 번영의 길: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해설자료, p.6)

작권 보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북한 저작물의 국내에서의 저작권보호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한문화교류 전반에 큰 저해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교류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남북한관계 발전에 따른 다양한 북한자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 원활한 정보자료 이용을 도모하면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문화교류 확대에 따른 북한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문제를 살펴보고, 국내에서의 북한자료 이용 현황을 북한자료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남한 저작권법과의 차이점 등을 살펴보고, 제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도서관에서 북한저작물 이용 시 면책 규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남북한 저작권법 모두 국제협약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내용까지 상세하게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권의 제한을 법 조항에 명시하고 있으나 남한의 저작권법이 복제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반해, 북한 저작권법은 구체성이 미흡하여 선언적 의미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국내에서 북한자료의 활용이 현저히 제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도서관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방안을 법적·제도적 측면, 정책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북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북한저작물 이용을 활성화하여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첫째,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저작권법에 한시적으로 북한자료 활용을 위한 특례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 저작권법 소관 부처인 문화관광부, 남북한 교류 소관 부처인 통일부, 특수자료 취급지침 소관 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협의 하에 현 저작권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북한자료의 국내 이용 시 북한저작물 보호를 위한 도서관 면책 규정의 범위를 부분적으로 확대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상에서 거론된 상호보호 조항을 발전시켜 실체적, 절차적 규정이 포함된 부속합의서 혹은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도서관 면책규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항을 포함하여 “저작권의 정의, 내용, 보호기간, 제한, 저작물의 종류 등에 대하여 남북합의하에 세칙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정책적 측면에는 첫째, 북한저작물의 저작권보호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관 정부부처간의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남한 내부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남북한간의 협의에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이 상호 협의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협의기구 설치가 필수적이다. 셋째,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하고 남북관계 주관 부서인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관련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특수자료 관련 업무를 통일부로 이관하여 전향적으로 북한자료를 공개, 이용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북한자료의 공개 확대를 통해 국내자료와 동일하게 도서관에서의 면책 규정을 포함한 저작권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이는 정부의 관련 법령(국가보안법 등)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경우에 따라

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남북이 공동으로 가입하고 있는 베른 협약을 준수하는 동시에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근무하는 직원과 북한자료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보호를 위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희일. 2003.『도서의 불법 복사·복제 실태와 향후 발전 방안』. 서울: 한국복사전송권 관리센터.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2002.『탈냉전·정보화시대에 따른 북한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공유방안』. 2002년 국회정보 위원회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 국가정보원. 2003. 특수자료취급지침.
- 권순택. 2001a.『남북통일 이전과 이후의 북한 저작물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순택. 2001b. 북한저작권법에 대한 평가.『지식재산』21, 69(11): 135-157.
- 김귀옥. 2002. 북한자료의 효율적 활용방안: 특수자료의 통일사료로의 거듭남을 위하여.『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워크숍』.
- 김귀옥. 2002. 통일사료의 축적과 북한자료의 공개·확대 방안 연구(1-77).『2002년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서울: 통일부.
- 김문화. 1989.『통일문화형성을 위한 기본방향: 문화부 주최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의 방향에 관한 토론회』(1989.10.28-29).
- 김기태. 2000.『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서울: 삼진기획.
- 김상호. 2002. 북한 저작권법의 내용과 특징.『법학연구』, 11: 77-109.
- 김상호. 1990.『북한저작물의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저작권 연구자료 6』. 서울: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 김윤명·정준민 저. 2002.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개정 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정보관리학회지』, 19(2): 181-201.
- 김은기·임수경 저. 2004. 인터넷 이용과 도서관에서의 저작권.『저작권』(2004 여름호): 2-18.
- 김정규. 2006.『대학도서관의 북한자료 관리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영. 2004.『남북교류상 저작권 분쟁 및 협력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포옥·이진숙 공저. 2004. 도서관 저작권보상에 대한 집단인식 비교연구.『정보관리 연구』, 35(3): 29-50.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2005. 남북 저작권 교류의 경과.『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2005.12.7 [서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2005.『남북 저작권 교류·

- 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2005.12.7 [서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 대법원 1961.9.28. 선고, 4292 행상48 판결.
- 박의환. 2001. 도서관이용과 저작권문제. 『국회 도서관보』, 38(2): 3-18.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7.26. 선고, 89카13962 결정.
- 신영석. 1988. 공산권자료 개방과 북한자료 공개 의미. 『통일한국』, 58: 40-41.
- 신재호. 2005. 도서관에서의 저작물의 보호와 이용: 저작권법 제28조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회도서관보』, (2005.10): 32-49.
- 신창섭. 1990. 『분단보다 통일비용이 싸다』. 서울: 열음사.
- 신창환. 2004. 미국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문제. 『저작권』 여름호: 19-30.
- 연합뉴스. 2001. "연합뉴스 속보" 2001.7.21(통 일부 정보분석국).
- 오경숙. 2003. 국내외 해외북한자료 수집·활용실태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29(3): 213-227.
- 이상정·송영석. 2003. 『저작권법개설』 제3판. 서울: 세창출판사.
- 이우영. 2005. 북측 저작물의 가치와 보호 필요성(pp.19-24).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2005.12.7 [서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 이은정. 2002. 북한의 지적 재산권 『북한법연구』, 5(2002.6): 139-169.
- 이재원. 2000. 남북 문화교류와 저작권 문제. 『저작권』, 51(2000.10): 34-37.
- 이형하. 1992. 저작권법상의 자유 이용.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 문제(하)』재판자료 제57집. 법원행정처.
- 이호신. 2004.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와 전송에 관한 연구. 『도서관』, 59(1): 43-64.
- 이호웅. 2004. 저작물 "일부분" 이용에 관한 적정 선.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관한 세미나: 2004 저작권세미나』. 서울: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 장명봉. 2005.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저작권법(pp.639-642).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 『남북문화교류와 저작권문제: 저작권 연구자료 13』.
- 전영선. 2005. 남북 사회문화 교류와 저작권 문제. 『아태지역동향』, 159(4): 15-21.
- 정상조. 1996.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국회도서관보』, 1996(12): 10-14.
- 정진섭·황희철. 1995. 『국제지적재산권법』. 서울: 육법사.
- 최경수. 2001. 『국제지적재산권법』.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최경수. 2005. 북측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pp.27-37). 『남북 저작권 교류·협력을 위한 심포지엄』, 2005.12.7 [서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 최용주. 2001. 디지털도서관과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연구. 『국립대학도서관보』, 19: 141-151.
- 한국. 문화관광부. 저작권법 [Cited 2006.2.11] <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laws/laws_view.jsp>.
- 한국. 통일부. 2002. 『남북교류협력법규집』.
- 한국. 통일부. 199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2.19

- 발효).
- 한국. 통일부. 199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9.17 발효).
- 한국. 통일부. 1999. 남북한 왕래자의 휴대금지 품 및 처리방법(통일부고시 제99-1호) (pp.457-461). 『통일부 법령집』. 서울: 통일부.
- 한국. 통일부. 2001 정보분석국 보고자료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특징”에서 발췌, 정리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우리나라의 북한문화 접촉창구 실태 조사』.
- 한상완 등 저. 1996.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도서 관정책과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1): 89-103.
- 한승현. 1995. “남북한간 저작권 상호보호방안.” 『95년도 전문가 위촉과제종합 (사회·문화 분야)』. 서울: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 홍재현. 2000. 디지털 도서관의 저작물 전송 활성화 방안: 저작권과 관련한 제도적·기술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 11(1): 67-92.
- 홍재현. 2002.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1): 171-200.
- 홍재현. 1999. 인터넷시대의 디지털도서관 구축·운영과 관련한 저작권문제. 『정보관리학회지』, 16(1): 32-48.